성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0년 8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타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인 “성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”를 “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”로 함.

나.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%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제1항제4호, 안 제4조제1항제8호)

다.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타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함(안 제4조제1항제6호)

라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.

3. 자치법규안 : 붙임과 같음

4. 예산관련사항 : 년간 군비 3백만원정도 소요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56조 및 감면조례 표준안
【경상북도 세정과-3775(2010. 03. 16)】

나. 입법예고('10.7.30 ~ '10.8.20)결과 : 의견 없음

다. 기타참고사항 :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성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”를 “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방세입” 을 “세입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
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”을 “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세입금”으로, “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”를 “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규정에”를 “규정에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6. 도로, 하천부지,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·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8.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4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4조 각 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단서 중 “다음년도”를 “다음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”를 “제4항을 따르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허위 기타”를 “거짓 또는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행정 착오에 의하여”를 “행정착오로”로, “이를”을 “지급한 포상금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제3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성주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	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“지방세입” 이라함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“세입”----------.
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	제3조(지급대상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「지방세법」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성주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	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세입금----------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④ ---------- 규정에도 ---------- --------.
제4조(지급기준)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	제4조(지급기준) ① ---------- ---------- 따른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도로, 하천부지,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	6. 도로, 하천부지,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·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.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급한도) 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	제5조(지급한도)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지급신청) ① (생 략)	제8조(지급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4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첨부하여 성주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.	③ 제1항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따른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지급)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 할 수 있다.	제9조(지급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다음 연도----------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	② 제1항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-- 제4항을 따르되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
제10조(환수)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	제10조(환수) ① ------ 거짓 또는 그 밖의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해당 ---------- 행정착오로 ---------- 지급한 포상금을 ---------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	③ 제1항에 따라 ---------- 제39조에 따른 ----------.